대법원 2018다279446 손해배상(기)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피고(대형 유통회사)의 패밀리 멤버십 카드 회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① 피고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통지의무 및 열람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들의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통지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열람을 거부하였다거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② 피고의 개인정보 제공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들의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음(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79446 판결)

1. 사안의 개요

▣ 피고(대형 유통회사)는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고객들의 개인정보와, 위탁업체 상담원을 통해 피고의 패밀리 멤버십 카드 회원 중 가입과정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이하 '미동의 FMC 회원')을 상대로 제3자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험회사들에 판매하여 왔음

▣ 보험회사들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미동의 FMC 회원 정보를 분석하여 그 중 보험상품 설명을 위한 전화 받기를 원하지 않는 고객, 이미 보험계약

을 체결한 고객, 최근에 텔레마케팅 통화를 한 적이 있는 고객 등을 걸러내는 이른바 '필터링 작업'을 수행한 후, 남은 고객들에 대해서만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보험 텔레마케팅 영업을 하였음

▣ 그런데 보험회사들에 제공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중 보험회사들의 필터링을 거치고 남은 유효 데이터베이스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어 개인정보 판매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피고는 미동의 FMC 회원으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기 전에 그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험회사들에 건네주어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종전에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시행하던 필터링 작업을 미리 시행하는 이른바 '사전필터링'을 하도록 함

▣ 피고의 경품행사에 응모한 원고들과 미동의 FMC 회원인 원고들은, 피고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통지의무 및 열람의무 위반, 사전필터링을 위한 회원정보 제공이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들은 피고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통지의무 및 열람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들(이하 '원고들 ❶')과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들(이하 '원고들 ❷')로 나뉨

▣ [참고]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관련 규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각 호 생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

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하 각 호 생략)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소송의 경과

▣ 제1심: 원고들 일부 승

- 피고가 보험회사들에게 미동의 FMC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이전하거나 경품행사 응모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의 의사에 기한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등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의 유출로 볼 수 없음
- 피고는 원고들의 개인정보 열람 신청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원고들 ❷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에 따라 인정할 수 있음

▣ 원심: 항소기각[제1심판결 인용 + 추가 판단]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개인정보의 유출은 구분되는 개념이고,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유출로 보기 어려움
- 더욱이 원고들 ❶은 피고의 경품행사에 응모하면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사전필터링을 위한 정보제공의 대상이 된 사실도 없음
-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들 ❶의 열람을 거부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들 ❶이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원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원고들 ❶이,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각 상고함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등에서 정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통지의무의 대상

▣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의 열람을 거부하였는지 여부

▣ 사전필터링을 위하여 고객의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고객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상고기각**

다. 판단 근거

▣ 원고들 ❶ 부분**[543명]**

- 피고가 원고들 ❶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유출사고 통지의무 및 열람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

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음 ⇒ 원고들 ❶ 상고기각

▣ 원고들 ❷ 부분**[267명]**

●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 ❷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음 ⇒ 피고 상고기각